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190

발의연월일: 2021. 8. 24.

발 의 자:이동주·강훈식·김경만

김정호・송갑석・신영대

신정훈 • 양이원영 • 위성곤

이성만 · 이학영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약속어음은 자금융통·신용거래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결제기간의 장기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연쇄부도 위험 등의 단점으로 어음 대체 결제수단 보완에 대한 중소기업의 요구가 꾸준하게 존재하여 왔음.

정부가 외상거래 수단의 신용을 보강하고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출채권보험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으나, 보험의 성격으로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하는 수단으로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조기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0조의3 신설 등).

법률 제 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3부터 제60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3(중소기업매출채권팩토링계정의 설치)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물품이나 용역 등을 제공하고 보유하고 있는 매출 채권에 대해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판매기업에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이하 "중소기업매출채권팩토링"이라 한다)를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중소기업매출채권팩토링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60조의4(계정의 재원·용도 및 운용) ① 중소기업매출채권팩토링계정 (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 및 그 외의 자의 출연금
- 2. 다른기금으로부터의 전입
- 3. 제65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 4. 제60조의6에 따라 적립한 손실보전금
- 5. 계정의 운용 수익
- 6. 그 밖의 부대수입
- ②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 1. 매출채권 인수에 따른 대금 지급
- 2. 계정재산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 ③ 계정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 1. 금융기관에의 예치
-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 제60조의5(계정의 회계 및 결산) ①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계정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0조의6(손실보전금의 적립)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결산기마다 손실보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손실보전금의 계상에 필요한 사항은 제60조의8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한다.

- 제60조의7(손익금의 처리) ①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 ②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 제60조의8(업무방법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 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팩토링 할인율에 관한 사항
 - 2. 팩토링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 3. 팩토링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 4. 팩토링의 지급 및 회수에 관한 사항
 - 5. 팩토링의 손실보전금 적립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팩토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60조의9(감독 및 명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계정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u><신 설></u> | 제60조의3(중소기업매출채권팩토 링계정의 설치) 제2조제1호가 목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물품 이나 용역 등을 제공하고 보유 하고 있는 매출채권에 대해 상 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판매 기업에 신속하게 자금을 공급 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이하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이라 한다)를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창 업 및 진흥기금 내에 중소기업 |
| <신 설> | 매출채권팩토링계정을 설치할수 있다. 제60조의4(계정의 재원·용도 및 운용) ① 중소기업매출채권팩 토링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그 외의 자의 출연 금 2. 다른기금으로부터의 전입 3. 제65조에 따른 채권의 발행 |

으로 조성되는 자금

- 4. 제60조의6에 따라 적립한 손 실보전금
- 5. 계정의 운용 수익
- 6. 그 밖의 부대수입
- ②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

 로 운용한다.
- 1. 매출채권 인수에 따른 대금 지급
- 2. 계정재산의 운용·관리에 필 요한 경비
- ③ 계정의 여유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 1. 금융기관에의 예치
-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지방 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 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제60조의5(계정의 회계 및 결산)

- ①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계 정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 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 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서를

<신 설>

<신 설>

<신 설>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0조의6(손실보전금의 적립)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결산 기마다 손실보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손실보전금의 계상 에 필요한 사항은 제60조의8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한다.
- 제60조의7(손익금의 처리) ① 계 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 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

<신 설>

하고도부족할때에는정부가예산의범위에서보전할수 있다.

제60조의8(업무방법서)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방법서를 작 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팩토링 할인율에 관한 사항 2. 팩토링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 3. 팩토링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 4. 팩토링의 지급 및 회수에 관 한 사항
- 5. 팩토링의 손실보전금 적립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팩토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0조의9(감독 및 명령) 중소벤 처기업부장관은 계정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명령을 할 수 있다.

<신 설>